

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---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#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오영탁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0년 8월 26일

○ 회부일자 : 2020년 8월 28일

3. 제안이유

-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, 문화예술교육지원 협의회 구성을 확대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와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문화예술교육, 문화예술교육시설 등 사용 용어의 정의를 명확화 (안 제2조)
-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, 협력체계 구축, 사회적 배려대상자 기회보장에 대한 도지사 책무 규정 신설 (안 제4조)
-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9조에 의한 위원구성과 위원장, 부위원장 등 명시(안 제6조)

## 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사용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,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화 하는 한편,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확대 구성하여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  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 - 안 제2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, 문화예술교육시설, 문화예술교육단체,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,
  -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
    -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
    - 충청북도교육감, 충북문화재단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
    - 저소득층,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보장을 구체화 하였으며,
  - 안 제6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9조에 의한 20명 이내의 위원구성과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촉위원을 명시하였음.
  
- 이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‘도지사의 책무 구체화’, ‘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구성 확대’ 등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,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붙임: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